

동아시아 근대 외국인 거류제도의 계보와 그 기원*

- 중국 '조계' 모델의 탄생을 중심으로 -

박준형**

〈차 례〉

- 머리말
- 난징조약 체결 이후 조약체제하 공간구조의 형성과 그 적용 문제
 - 조약상 외국인 거류구역 규정의 변화와 '내지'와의 경계
 - 내지통행세 부과 문제와 '내지'의 범위
- 외국인 거류구역의 설정과 '조계' 모델의 탄생
 - 광저우: 성벽의 안과 밖
 - 상하이: 잡거와 분거, 전관과 공동의 기로
-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일국의 경계를 넘어 동아시아 외국인 거류제도의 계보 작성을 목적으로 그 원점인 중국의 사례들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계' 모델 탄생의 의미를 살피고자 한 것이다.

전근대 시기 외국과의 무역을 특정 지역에 한하여 허용하는 제도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나가사키의 데지마, 중국 광저우의 광동상관, 한국 부산의 초량왜관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른바 근대적인 조약체제로 편입해 가는 과정에서 기존 외국인 거류제도는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했다. 그럼에도 하나의 계보 작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당시의 패권국가 영국이라는 존재 때문이다. 일본의 개국 및 개항에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이지만, 그에 앞서 중국의 문호를 열고 조계 모델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거류지의 신모델을 만들어 낸 것은 영국이었다. 그리고 조선의 개항은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일본 거류지의 신모델을 조선에 이식하여 조계의 표준을 만든 것 또한 영국이었다. 따라서 영국의 동아시아 외교를 매개로 한다면 동아시아 외국인 거류제도 계보에 접근할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NAHF-2023-기획연구-06)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수 있다.

‘조계’ 모델은 근대 조약의 체결과 동시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영국의 해외 입식지들과 달리 선행 도시계획 모델이 부재하는 속에서, 그를 규정하기 위한 조약상의 근거가 우선 마련되어야 했다. 또한 그것은 언제나 ‘조계’ 밖 공간인 ‘내지’와의 상관관계 속에서만 규정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조약상의 공간들이 형성한 하나의 체제는 때때로 전혀 다른 의도로부터 ‘속국’으로의 외적 확대가 시도되기도 했다. 한편 조약체제하 각 공간들 사이의 관계는 최종적으로는 광저우, 상하이 등과 같은 조약항의 구체적인 사례들 속에서 조율되었다. ‘조계’ 모델의 탄생은 그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로들에서 선택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들은 이후 중국 국내는 물론 일본과 조선으로 전파되는 또 다른 과정에서 다양한 변주를 야기하게 된다.

[주제어] 외국인 거류제도의 계보, ‘조계’, ‘내지’, 광저우, 상하이, ‘조계’ 모델의 탄생

1. 머리말

한국의 개항장 연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도 필수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저서가 바로 손정목의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개항장·개시장·조계·거류지』(1982)이다. 이 책에서 그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인천, 부산 등 개항장에 집중한 것을 지적하면서 한성, 평양 등 개시장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했다. 그뿐만 아니라 ‘조계’와 더불어 ‘조계’ 밖 공간인 ‘조계 밖 10리 이내’나 ‘내지’도 주목하여 개념적인 정리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조약들과 비교해서 한국적 특색을 갖는 것으로 들었던 것이 다름 아닌 ‘조계 밖 10리 이내’ 공간이다. 이에 대해 손정목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1883년에 조선에 와서 조영조약을 체결한 주청영국공사 파크스는 중국에 있어서의 이급과세구역 문제, 일본(고베)에 있어서의 거류지 밖 잡거지 등, 자신이 현지에서 몸소 겪은 체험을 살려 조선에 있어서는 “조계 밖 10리의 범위 내에서는 영국인이 토지를 구입·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개항장·개시장을 둘러싼 논란의 대상을 미리부터 해결해 버린 것이다.¹⁾

1) 孫禎睦, 『韓國開港期 都市變化過程研究: 開港場·開市場·租界·居留地』, 一志社, 1982, 65쪽.

즉 ‘조계 밖 10리 이내’ 공간은 조영수호통상조약의 영국 측 체결 당사자인 주청영국공사 해리 파크스(Harry Parkes)가 중국과 일본에서 당면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조계 밖 10리 이내’ 공간 창출에 있어서 파크스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해당 규정의 완결성을 부각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손정목의 이와 같은 관점을 계승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파크스가 중국 및 일본에서 어떤 경험을 축적했는가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왜냐하면 어떤 경험들이 ‘조계 밖 10리 이내’라는 조약상의 잡거 공간을 만들어 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앞서 한국적 특색이라 한 것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일본의 개국 및 개항에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이지만, 그에 앞서 중국의 문호를 열고 조계 모델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메이지유신 전후 정치적 격변 속에서 일본 거류지의 신모델을 만들어 낸 것은 영국이라는 사실이다. 조선의 개항도 일본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조선 외교의 다각화 이후 일본 거류지 신모델을 조선에 이식함으로써 조계 모델의 표준을 만든 것 또한 영국이었다. 따라서 영국의 동아시아 외교를 따라가면 중→일→한으로 이어지는 외국인 거류제도의 계보 작성이 가능해지며,²⁾ 그것은 결국 조계 제도의 기원인 중국에서의 외국인 거류제도의 성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중국의 외국인 거류제도 연구는 이미 1930년대부터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³⁾ 다만 이것은 제국 일본의 중국 침략이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1945년 제국 패망 이후 동일한 문제의식과 방법론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는 없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중국 근대외교사라는 범주

2) 필자는 2022년도 동북아연구재단 기획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의 조계 모델이 한국에 전파되는 과정을 검토한 바 있다. 연구 결과는 전체적으로 수정·보완하여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하 외국인 거류제도의 계보: 일본 모델의 한국 전파 과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한국 문화』 101호(2023.03)에 발표했다. 이 글은 이 연구의 후속편에 해당한다.

3) 植田捷雄, 『支那租界論』, 嚴松堂書店, 1934; 『支那に於ける租界の研究』, 嚴松堂書店, 1941 등.

안에서 중국의 개항 및 조계에 대한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⁴⁾ 그
에 반해 중국에서는 중국의 근대 조약체제는 물론,⁵⁾ 조계(혹은 통상구안(通
商口岸), 곧 개항장) 역사 일반 또는 특정 도시의 조계 연구까지 찾아볼 수
있다.⁶⁾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중국 개항도시는 물론 중국에 있던 일본조계를
중심으로 조계사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⁷⁾ 중국과 일본의 대표적 개항도시
인 상하이와 요코하마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⁸⁾

다만 이상의 연구들은 대체로 일국의 단위를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비교 연구라 해도 국가의 경계를 선형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는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글의 목적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동
아시아 외국인 거류제도의 계보 작성이다. 그를 위해 문제의식의 뿌리는 한
국에 둔 채로 동아시아 근대 외국인 거류제도의 원점인 중국의 사례들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자 한다.

1842년 난징조약을 통해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의 개방이 결정되기는
했으나, 외국인 거류제도로써 ‘조계’는 조약 체결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형
성되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어떤 내용의 제도가 모델로서 성립했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주된 검토 대상으로 삼은 시기는 난징
조약 체결 이후부터 재류외국인에게 일종의 ‘마그나 카르타’로서 가능한
1858년 텐진조약⁹⁾ 체결 때까지이다. 글의 구성은 우선 제2장에서는 조약상

4) 植田捷雄, 『東洋外交史』, 東京大學出版會, 1969; 坂野正高, 『近代中國外交史研究』, 岩波書店, 1970; 坂野正高, 『近代中國政治外交史』, 東京大學出版會, 1973; 岡本隆司, 『近代中國と海關』, 名古屋大學出版會, 1999; 川島眞, 『中國近代外交の形成』, 名古屋大學出版會, 2004 등.

5) 吳義雄, 『條約口岸體制的醞釀: 19世紀30年代中英關係研究』, 中華書局, 2009; 李育民, 『近代中國的條約制度』, 湖南人民出版社, 2010; 胡門祥, 『晚清中英條約關係研究』, 湖南人民出版社, 2010 등.

6) 費成康, 『中國租界史』,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1; 張洪祥, 『近代中國通商口岸與租界』, 天津人民出版社, 1993; 楊天宏, 『口岸開放與社會變革: 近代中國自開埠頭研究』, 中華書局, 2002; 廖樂柏 (Robert Nield) 著·李筱, 『中國通商口岸: 貿易與最早的條約港』, 東方出版中心, 2010; 馬長林·黎霞·石磊 等, 『上海公共租界城市管理研究』, 中西書局, 2011; Robert Nield, *China's Foreign Places: The Foreign Presence in China in the Treaty Port Era, 1840-1943*, Honkong University Press, 2015; 王汗吾·吳明堂, 『漢口五國租界』, 武漢出版社, 2017 등.

7) 吉澤誠一郎, 『天津の近代: 清末都市における政治文化と社會統合』, 名古屋大學出版會, 2002; 大里浩秋·孫安石 編著, 『中國における日本租界: 重慶·漢口·杭州·上海』, 御茶の水書房, 2006; 大里浩秋·貴志俊彦·孫安石 編著, 『中國·朝鮮における租界の歴史と建築遺産』, 御茶の水書房, 2010; 大里浩秋·内田青藏·孫安石 編著, 『東アジアにおける租界研究: その成立と展開』, 東方書店, 2020 등.

8) 『横濱と上海』共同編輯委員會編, 『横濱と上海』, 横濱開港資料館, 1995.

의 외국인 거류구역 관련 규정들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살펴되, 항상 ‘조계’ 밖 공간, 곧 ‘내지’와의 상관성 속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조약 규정에 의한 제한들과 다양한 변수들 속에서 최초의 ‘조계’ 모델이 어떻게 탄생¹⁰⁾했는지를 5개 조약항 중 광저우와 상하이의 사례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볼 것이다.

2. 난징조약 체결 이후 조약체제하 공간구조의 형성과 그 적용 문제

1) 조약상 외국인 거류구역 규정의 변화와 ‘내지’와의 경계

1842년 제1차 아편전쟁 이후 청국과 영국 간 난징조약 체결은 시기적으로 영국의 입식지(入植地) 도시계획 모델로 수립된 ‘그랜드 모델’의 적용이 종언을 고하는 때와, 또 무역을 통한 이익을 우선시하여 무계획 상태에 있던 열대의 항만도시가 도시 개조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시작하는 때 사이에 위치한다. 난징조약에 의해 개방된 5개 조약항(광저우, 푸저우, 아모이, 닝보, 상하이)은 당연히 입식지가 아니라 항만도시의 계보 위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위와 같이 이 시기는 항만도시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조약항들이 모범으로 삼을 만한 선형 도시계획 모델의 부재를 말해 주는 동시에, ‘자유방임’ 상태에서부터 탈각이라는 시대적 방향성을 암시해 주기 때문이다.¹¹⁾

실제로 일찍이 우에다 도시오가 “조계의 기원”으로 평가한 바 있는 난징조

9) 岡本隆司, 『ラザフォード・オルコック』, ウェッジ, 2012, 112쪽.

10) 이 글에서 ‘조계’ 모델의 탄생이라고 할 때 ‘조계’란 오키모토 다카시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중국 정부 권력이 간섭할 수 없는 공간, 소수 외국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대다수 화인(華人)은 보호를 받으면서도 열위에 놓이는 사회, 외국의 중국 진출 교두보이자 서양 문화 유입의 창구’와 같은 공간을 말한다(岡本隆司, 앞의 책, 2012, 79쪽).

11) 영국의 식민도시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로버트·홈 著/布野修司·安藤正雄 監譯, 아시아都市建築研究會 譯, 『植えつけられた都市: 英國植民都市の形成』,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1 참고.

약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지금 이후로 대황제는 영국 인민이 어떤 장애도 없이 가족을 데리고 연해의 광저우, 푸저우, 아모이, 닝보, 상하이 등 다섯 항구에서 기거하고 무역 통상하는 것을 은혜로이 허락한다”¹²⁾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외국인 거주무역권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행할 거주구역 및 그를 정할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¹³⁾ 이를 볼 때 위 조문은 다섯 개 조약항의 공간 구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위의 다섯 개 조약항을 무계획적 항만도시의 계보 위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그러나 이듬해 난징조약의 후속조약으로 체결된 후먼조약 제7조에서는 외국인 거류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볼 수 있다. 즉 “중화지방관은 반드시 영국감독관(管事官)과 각 지방 민정을 살펴 어느 지방의 어느 방옥(房屋)을 사용할 것인지 논의해서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더불어 위 조문에서는 임대차 과정이나 임대료 책정 시 공정성 확보를 주문했고, 영국감독관은 영국인 거류 상황을 청국 지방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후 청국은 미국, 프랑스와도 차례로 왕샤조약(望廈條約)과 황푸조약(黃埔條約)을 체결했는데, 이들 조약에서도 외국인 거류구역 설정과 관련한 규정들은 반복되었고 상세함을 더해 갔다.¹⁴⁾

12) 이 글에서 인용하는 조약문은 1차적으로 『근대 조약과 동아시아 영토침탈 관련 자료 선집』 I (동북아역사재단편, 2021)을 참고했으며, 여기에 실려 있지 않은 경우 『舊條約彙纂』 제1권 제1부(外務省條約局, 1930), 『清朝條約全集』 제1권(黑龍江人民出版社, 1999), 『中外舊約章彙編』(三聯書店, 1957) 등에서 확인했다. 다만 조약문 번역은 위 선집을 참고해서 필자가 다시 시도했다. 또한 번역 시에는 한문본을 기본으로 하고 영문본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이하에서 조약문 출처는 생략하되 조약문 원문은 글 말미의 〈부록〉에 별도로 수합·정리해 두었다.

13) 植田捷雄, 앞의 책, 1934, 11~15쪽.

14) 먼저 왕샤조약 제3조에서는 다섯 개 조약항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 및 무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미국인의 거주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인 제17조에서 상세히 규정했는데, 후먼조약과 같이 양국 지방 당국자들이 협의하여 거류구역을 정하고 임대료 설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임차 목적을 거주나 무역은 물론 병원, 예배당, 묘지의 건설까지 확대했다. 황푸조약에서도 프랑스인의 거주무역권은 제2조에서 적시한 후 거류구역 설정에 대한 규정은 제22조로 양보했다. 대체의 내용은 왕샤조약 제17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임차 목적으로 병원, 예배당, 묘지 등에 더해 구급시설, 학교 건설까지 추가했으며, 나아가 “다섯 개 항구 지방에서 프랑스인의 건물 칸 수, 대지의 면적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아 프랑스인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조계 범주의 제한을 없앤 이 조문은 향후 조계 확장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費成康, 앞의 책, 1991, 55쪽).

이와 같이 후편조약 이래 외국인 거류구역 설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조약상의 서로 다른 근거로부터 조약항과 거류구역(항후 ‘조계’로 명명될 공간)이라는 두 개의 공간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조약 체결 당사국들이 양자 사이의 관계를 서로 다르게 이해한 점에 있었다. 청국 측은 조약항이 곧 거류구역이라는 설을 고집했고, 체결국들은 거류구역은 조약항 내 일부라고 주장했다. 전자는 조약항과 거류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거류구역 설정 시 조약항의 범주를 조계 내로 한정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후자는 조약항 내에서는 거류구역 안팎을 불문하고 조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유리함이 있었다. 우에다는 청국 측이 근거로 내세운 ①항저우 성내 미국인 거주 금지 사건, ②즈푸조약 제3장 제1조의 이금면제구역(釐金免除區域) 설정 규정, ③1907년 가오칭탕(高慶堂) 사건, ④국제지역(國際地役)설 등을 차례로 검토한 후 그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식으로 자신의 논지를 전개했다.¹⁵⁾ 여기에서는 위 사례들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면서 동시에 손정목이 파크스의 중국 경험으로도 언급했던 ②만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자.

1876년에 청국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즈푸조약 제3조 제1항은 “현재 시행 중인 조약에 따라 개항장에서 외국 상품에 대해 이금을 징수할 수 없는 지역과 관련하여, 토머스 웨이드 경은 그의 정부를 설득하여 각 항구들에서 외국인들에게 임대된 땅(이른바 ‘concession’)을 이금면제구역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금’이란 태평천국 진압 경비 마련을 목적으로 1853년에 신설된 내지통행세를 말한다.¹⁶⁾ 위 조문은 이금의 면제구역을 ‘조계’와 일치시키기로 합의했다는 것으로, 따라서 중국 측은 이를 근거로 내지통행세, 다시 말해서 ‘내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금의 면제구역이 ‘조계’이므로, ‘조계’는 ‘내지’가 아닌 장소, 곧 ‘조약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

15) 植田捷雄, 앞의 책, 1934, 57~62쪽.

16) ‘이금’은 본래 재정 상황이 호전되면 폐지되어야 하는 임시세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태평천국 진압 후인 청조 후기와 심지어는 민국 시기까지도 줄곧 재정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영국 등 각국은 1858년 텐진조약 단계에서 이미 해관에 2.5%의 자구반세(子口半稅)를 납입하면 수입 외국 상품과 수출 청국 상품에 대한 이금면제를 규정한 바 있었다(飯島涉, 「裁釐加稅問題と清末中國財政: 1920年中英マッケイ條約交渉の歴史的地位」, 『史学雑誌』 102(11), 1993, 1916~1917쪽).

던 것이다.¹⁷⁾

이에 대해 우에다는 “오해를 낳기 쉬운 조항”을 체결한 것은 영국 측의 ‘실책’이라고 논평하면서도 청국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즉 즈푸조약 체결 후 위 조항으로 인해 거센 비판을 받은 영국은 1885년에 추가 조약을 체결하여 시행 날짜 확정을 장래 협의 사항으로 유예시킴으로써 해당 규정을 사문화했다는 것이다. 설령 위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이금면제 구역을 조약항 일부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약항 내 나머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징세는 결국 국세로 취급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징세 지역을 ‘내지’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에다의 주장이다.¹⁸⁾

여기에서 우에다는 ‘조약항’과 ‘조계’ 사이의 관계를 문제 삼았지만,¹⁹⁾ 그것은 동시에 ‘조계’(혹은 ‘조약항’)와 ‘내지’의 경계를 묻는 것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욱의 최근 연구는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난징조약 체결부터 텐진조약 체결까지 시기를 ‘난징조약체제’로 명명한 후, 이 시기에 청국은 서양 세력에게 양보하여 이른바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기는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조약을 통해 서양인들의 행동을 구속하기도 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 중 하나로 후면조약 제4조를 들었다.²⁰⁾ 앞서 인용한 후면조약 제7조는 영국인의 거주무역권을 보장하는 내용인데 반해, 제4조는 다섯 개 항구 이외 ‘다른 항구(他處港口)’에서 통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제재 방법까지 명시해 놓았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대비된다.

그런데 청국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속국’까지 확대하고자 했다. 이동욱에 따르면, 1845년 영국 군함 사마랑호가 조선 해역에 출몰하자 조선정부가 청 예부에 중재를 요구했는데, 청은 조약상의 ‘다른 항구’에 ‘속국’인 조

17) 植田捷雄, 앞의 책, 1934, 60쪽.

18) 植田捷雄, 앞의 책, 1934, 66~68쪽.

19) 우에다는 저서에서 ‘조약항’이 아니라 ‘개시장(開市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글에서는 ‘개시장’과 ‘개항장’을 구분하고, 또 조약에 의해 개방된 항구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항’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20) 이동욱, 「조약 체제 속에서 ‘천조’의 ‘속국’ 지키기: 『南京條約』 체제에서 『天津條約』 체제로」,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년 4호, 2019, 175쪽.

선까지 포함된다면서 영국 측에 조약 위반이라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임기응변적 대응이기는 했으나 사실상 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후 영국 측의 이의 제기가 없자 청국은 ‘속국’ 문제를 조약의 확대 적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반복했다.²¹⁾

후면조약 제6조는 조약을 통해 영국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이 조항에서는 아래 인용과 같이 ‘다른 항구’가 아니라 ‘내지’에서의 여행 및 무역을 금지했다. 그리고 위의 제4조와 마찬가지로 조약 위반 시 체포 및 처벌 규정까지 두었다.

광저우 등 다섯 개 항구에서 영국상인은 장기 거주를 하든 일시 내왕을 하든 모두 멋대로 향간(鄉間)에 들어가 임의로 여행할 수 없으며, 또 **내지(內地) 깊숙이 들어가 무역을 할 수도 없다.** 중화지방관은 응당 영국감독관과 함께 각 지방 민정 및 지세를 살피어 계지(界址, 곧 경계)를 의논하여 정하고 그를 넘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구히 피차간의 평안을 기약한다. 무릇 수부 및 선상인 등은 감독관과 지방관이 먼저 금약(禁約)을 정한 후에야 바야흐로 상륙할 수 있다. **만약 영국인 중 이 금약을 위반하여 멋대로 내지 깊숙이 들어가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품급(品級)인지를 막론하고 곧 해당 지방인민이 체포해서 넘기면 영국 감독관이 적절히 조치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인민 등은 함부로 구타하여 화호(和好)를 해쳐서는 안 된다.

난징조약만 해도 ‘내지’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 거류구역 설정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등장한 후면조약에서는 ‘조계(혹은 조약항)’와 경계를 맞댄 ‘내지’에 대한 규정 또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내지’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 곧 ‘금단의 땅’이었다. 위 조항은 이후 조약들에서도 계승되었다. 앞서 언급한 왕샤조약 제17조에서는 “내지 향촌으로 깊숙이 들어가 임의로 여행할 수 없다”고 했으며, 황푸조약 제23조

21) 이동욱, 위의 논문, 2019, 175~179쪽.

에서도 “영사관과 지방관이 의논해서 정한 경계를 넘어 장사를 할 수 없으며, 상선이 정박한 경우에도 해당 수부 등은 또한 경계를 넘어 여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 금지 사항이 그냥 ‘내지’가 아니라 ‘내지 깊숙이’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조계’를 벗어나더라도 근방에서의 활동은 제한적이거나 보장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후면조약 제6조 이래로 외국인 거류구역을 설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외국 영사와 청국지방관이 경계를 정해서 그를 넘지 못하도록 했을 때 그 경계는 ‘조계’의 경계가 아니라 ‘조계’ 밖 근방, 곧 ‘내지’에 그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황푸조약 제23조에서 ‘내지’에서 무역 및 여행을 금지한 조문의 전제가 된 것은 바로 “프랑스인이 다섯 개 항구 지방에서 거주하거나 왕래할 때 부근 처소에서 산책을 할 수 있게 하여 그 일상 행동이 내지민인(內地民人)과 다름이 없게 해야 한다”는 ‘유보구역’의 존재였다.

이와 같이 ‘조계’ 밖 ‘유보구역’의 설정은 어디까지나 외국영사와 청국지방관 사이의 협의 사항이었다. 그러나 1858년에 체결된 텐진조약에서 그것은 일정의 거리들로 제도화되었다. 먼저 제11조에서는 광저우 등 5개 항구와 더불어 뉴장, 덩저우, 타이완, 차오저우, 충저우 등의 도시를 추가 개항한다고 명시했다. 거류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다섯 개 항구와 다름이 없다고 했다. 이어서 제12조에서는 기존 조약들과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정할 때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해 두었다. 이상의 두 조항이 ‘조계(혹은 조약항)’에 대한 것이라면 제9조는 ‘내지’와 관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계’ 근방에서의 왕래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기본적으로 ‘금단의 땅’이었다. 그러나 동 조약에서는 영사관으로부터 집조(執照, 통행증)를 발급받으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른바 ‘내지여행권’의 성립이다. 또한 항구로부터 거리로는 100리, 시일로는 3~5일 이내라면 집조도 필요로 하지 않다고 했다. 이로써 ‘내지’는 제한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내지’가 ‘조계’와 같은 공간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내지’는 여전히 외국인이 아니라 ‘내지민인’들을 위한 거주 장소였다. 원칙적으로는 ‘조계’와

‘내지’의 경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며, 그 점에서는 오히려 조약상의 공간들이 체계화되어 점차 세분화된 하나의 체제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텐진조약 체결 이후 ‘내지’ 개방이라는 상황은 다시금 청과 속국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시 이동욱에 따르면, 1860년대에 들어 “조선은 청의 속국이지만 내지와 외교는 자주”라고 하는 ‘속국자주론’을 제기하게 된다. 조선을 청과 하나의 조약 아래 두고자 했던 이전 주장과는 모순되는 것이었지만, 서양인의 내지여행을 허용한 텐진조약의 체결은 더 이상 조약의 확대 적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만약 텐진조약을 조선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열강에게 조선 진출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내지’ 분리를 통한 ‘속국구하기’가 요구되었다. 다시 말해서 ‘난징조약체제’에서는 ‘속국’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그리고 ‘텐진조약체제’에서는 ‘자주’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속국구하기’라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1870년대 청일수호조규 체결 이후부터는 다시 ‘속국’의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해서 1880년대가 되면 조선에 대한 종주권 강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²²⁾ ‘속국구하기’는 더 이상 임기응변적 언사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그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조선산 물품에 대한 이금부과문제였으며, 그 핵심은 조선을 중국의 ‘내지’로 볼 수 있는가 여부였다.

2) 내지통행세 부과 문제와 ‘내지’의 범위

청국에서 관세율은 애로호 전쟁기에 체결된 제 조약·협정에 의해 수출입 모두 증가 5%로 정해졌고(차와 견직물의 수출세와 아편의 수입세는 제외), 또 2.5%의 자구반세(子口半稅)를 지불하면 이금 등의 내지통행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1889년 6월, 조선산 종이를 텐진에서 통저우로 운반하

22) 이동욱, 위의 논문, 2019, 189쪽.

기 위해 자구반세를 납부하고 내지통행권 발급을 청구한 독일 상사 세창양행에 대해 텐진해관도(天津海關道)는 통행권 발급을 거부했다. 조선은 청의 속국이기 때문에 조선산 종이를 양화(洋貨)와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이유에 서였다.²³⁾ 양화와 토화(土貨)의 취급 차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어쨌든 이 조치에 대해 독일 공사관은 조선이 청의 속국이라면 왜 오늘에서야 그 문제를 제기하는지 따져 물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조선의 계약국으로서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 이하 ‘總署’)에 항의했다.²⁴⁾

총서는 북양대신 리홍장(李鴻章)에게 조사를 지시했다. 10월 14일 총서가 독일 공사관에 보낸 조회문²⁵⁾에는 리홍장의 보고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관세 부과에 있어서 ‘양화변법(洋貨辦法)’과 ‘토화변법(土貨辦法)’의 차이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즉 양화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수입세와 자구반세를 지불하면 수입품을 내지에 운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반해 토화를 청국 내 한 항구로부터 다른 항구로 운반하는 경우(復進口例) 수입세는 반감되지만 만약 그 토화를 내지로 운반해서 판매할 계획이라면 외국상인이라 해도 청국인과 같이 일체의 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의 서두에서 “조선화물을 중국의 각 항구로 운반할 경우 응당 토화를 국내 다른 항구로 운반하는 예(復進口例)에 비추어 처리해야지 각국 양화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처럼, ‘조선화물=청국토화’라는 등식을 인정한다면 세창양행이 운반해 온 조선산 종이는 수입세 반감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내지통행세 면제 대상으로부터도 제외되어야 했다. 결국 텐진해관이 정세로 징수한 수입세의 반을 환급하고, 또 세창양행이 조선산 종이를 내지가 아니라 개항장인 텐진에서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이 보였다.²⁶⁾ 그러나 일찍이 독일 공사관이 제기했던 조선의 자주국 지위를 구명하

23) 「朝鮮土貨ニ對シ清國ニ於テ輸入稅半減一件」(일본외무성의교사료관소장.3문14류3항36호)(이하 「輸入稅半減一件」), 明治22년 9월 28일, 機密信 제10호.

24) 「輸入稅半減一件」, 明治22년 10월 18일, 機密信 제13호.

25) 「輸入稅半減一件」, 明治22년 11월 29일, 機密信 제15호의 별지.

26) 「輸入稅半減一件」, 明治22년 9월 28일, 機密信 제10호.

는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청국 입장에서 조선토화에 대한 수입세 반감은 조선에 대한 ‘번속무육(藩屬撫育)’의 취지였고, 그 의미에서는 스스로의 ‘희생’을 감수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²⁷⁾ 그런데 실제로는 그 조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었다. 텐진주재일본영사 쓰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는 이 조치가 일본인에게 미칠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즉 조선으로부터 텐진에 수입된 주요 품목은 종이, 해삼, 고래지느러미 세 개 정도인데, “지금 조선산 해산물에 대해 수입세를 반감하더라도 이로 인해 일본산 해산물 수입이 감소될 정도는 아닙니다. 또 조선산 해산물은 주로 우리 상인이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반감 때문에 이익을 얻는 자 역시 우리 상인입니다. 지금 이곳 구미 상인 중에는 세창양행을 제외하고 조선화물을 수입하는 자가 없”²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의 조치는 애당초 정략적인 고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청국정부에 동의를 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텐진과 즈푸의 일본영사들은 청국의 조치를 “외교상의 대문제”,²⁹⁾ 혹은 “양국 외교상 묵인하기 어려운 일문제”³⁰⁾로 간주하여 본국정부의 주의를 호소했다.

그러나 주청일본공사 오시마 게이스케(大島圭介)는 청국과 외교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일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해서 설령 독일이 복구를 요구하더라도 그에 따르지 않을 생각이라고 본국에 보고했다.³¹⁾ 이에 대해 외무대신 대리 외무차관 아오키 슈조(青木周藏)는 독일과 그 외 공사가 조선산 수입세 반감에 이의를 제출할 때에는 “연횡의 책”으로 동맹하는 것이 마땅하나 조선을 ‘속국’으로 간주하는 것에는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³²⁾

27) 「輸入稅半減一件」, 明治22년 12월 20일, 機密 제7호.

28) 「輸入稅半減一件」, 明治22년 9월 28일, 機密信 제10호.

29) 「輸入稅半減一件」, 明治22년 9월 28일, 機密信 제10호.

30) 「輸入稅半減一件」, 明治22년 10월 5일, 機密 제39호.

31) 「輸入稅半減一件」, 明治22년 11월 29일, 機密信 제15호.

32) 「輸入稅半減一件」, 明治22년 12월 16일, 機密送 제819호.

다른 한편 청국의 조치는 조선에도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전술한 리홍장의 보고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후 조치가 요구되고 있었다. 즉 서양 상인이 조선토화(홍삼 및 별도의 규정이 있는 품목은 제외)를 청국 각 항으로 운반할 때에는 해당 세무사가 수출세를 징수한 후 빙단(憑單, 증명서)을 발급하도록 하고, 그를 근거로 청국에 입항할 때 수입세 반감이 이루어지도록 조선 측에도 통지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³³⁾ ‘총리교섭통상사의(總理交涉通商事宜)’라는 명의로 조선에 주재하고 있던 위안스카이(袁世凱)는 리홍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서간을 받고서 각 항에 파견되어 있는 청국 상무위원과 조선정부에 통지했다. 위안스카이는 조선토화 수입세 반감 조치는 청국이 ‘속국’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며 그에 따라 상속(上屬)의 명분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³⁴⁾

그의 보고에 따르면, 11월경까지는 조선정부로부터도 관련 기관이나 각 항 세무사에게 상기 통지의 준수를 지시했다는 회신이 왔다. 그런데 1890년 1월에 들어서자 조선정부는 돌연 그 회신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즈음 위안스카이를 방문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독관(督辦) 민종묵(閔種默)은 조선토화에 대한 징세는 서양 상인의 예에 비추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협의도 없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없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낸 것에 항의했다. 위안스카이는 청국이 ‘속국’을 우대하는 취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위의 요구를 물리쳤다. 위안스카이는 조선 측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조선정부의 외국인 고문 데니(Denny)와 총세무사 쉐니케(Schönicke)가 수작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즉 그들은 이번 청국의 조치가 조선의 자주체면에 크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선 측을 선동한 결과 일찍부터 조선의 자주를 피하고 있던 고종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다.³⁵⁾

오시마 공사는 1890년 6월 6일 아오키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재차 독일공사와 면회해서 그때까지 경위를 물어보니,

33) 「輸入稅半減一件」, 明治22년 11월 29일, 機密信 제15호의 별지.

34) 『清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1508번.

35) 『清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1508번.

세창양행은 청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서 본 건과 관련해서 청국정부와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사자인 독일이 이미 이와 같은 입장이고, 또 그 외 각국은 사건의 유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나서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으며, 결과적으로 조선토화 수입세 반감 조치는 당분간 청국이 조치한 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³⁶⁾

요컨대 1880년대 이후 청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 강화 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즈푸조약 체결 후 이금면제구역을 둘러싼 논쟁과 유사한 형태의 외교 문제가 재현되었다. 다만 청국에서 그것이 ‘조계(혹은 조약항)’와 ‘내지’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조선산 물품에 이금을 부과하려는 조치는 조약상의 ‘내지’를 ‘속국’인 조선까지 확대하려는 시도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약상의 ‘내지’ 확대를 통한 ‘속국구하기’는 이미 텐진조약 체결과 함께 중단된 바 있었다. 그러나 1880년대에 들어 조선은 영국 등과의 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이미 ‘텐진조약체제’와 다름없이 내지여행권이 보장된 상태였다. 따라서 청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조선으로 ‘내지’를 확대하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이와 같이 청은 국내 조약체제하 공간구조의 형성과 함께 그것의 외적 확대를 시도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청국 영토의 내적 공간 분할 또한 진전되어 갔다. ‘조약항’, ‘조계’, ‘내지’ 등 조약상에 규정된 공간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들 속에서 각각의 관계들을 조율해 가며 새로운 공간 모델을 형성해 갔다.

36) 「輸入稅半減一件」, 明治23년 6월 6일, 機密信 제14호.

3. 외국인 거류구역의 설정과 ‘조계’ 모델의 탄생

1) 광저우: 성벽의 안과 밖

전근대 시기 외국과의 무역을 특정 지역에 한하여 허용하는 제도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나가사키의 데지마, 중국 광저우의 광둥상관, 한국 부산의 초량왜관이 그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른바 근대적인 조약체제로 편입해 가는 과정에서 기존 외국인 거류제도는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했다.³⁷⁾ 중국의 경우를 보면, 난징조약 제5조에서 “무릇 영국상민이 광둥에서 행하는 무역은 관례적으로 모두 공행(公行)이라 칭하는 특허상인들이 도맡아 처리해 왔는데, 지금 대항제는 앞으로는 관례에 따를 필요가 없음을 허락한다. 무릇 영국상민 등 각 해당 항구에서 무역을 하려는 자가 있다면 어느 상인과 교역을 하든 상관없이 모두 그 편의를 봐 준다”고 함으로써 기존 광둥무역체제의 최종적인 해체를 선언했다. 동시에 광둥상관이 있던 광저우는 난징조약에 의해 개방된 다섯 개 조약항 중 하나로 재차 개방되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난징조약에서는 조약항의 개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인들이 거주할 곳이나 그 구역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개방의 범위였다. 앞서 인용한 난징조약의 영문본 제2조에서는 다섯 개 조약항의 “도시들과 마을들(cities and towns)”을 개방한다고 했지만, 한문본에서는 해당 부분을 “항구(港口)”라고 표기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국 측은 외국인이 항구에 거주하는 것은 인정했지만 시가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적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³⁸⁾

사실 동일 조약의 두 판본 사이의 표현 차이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다시 위 조약의 제2조를 가지고 말하자면, 다섯 개 항구의 개방에

37) 박준형,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하 외국인 거류제도의 계보: 일본 모델의 한국 전파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01, 2023 참고.

38) 坂野正高, 앞의 책, 1973, 206쪽.

대해 영문본에서는 청국 황제가 “동의한다(agree)”고 표현한 데 반해, 한문본에서는 대황제가 “은혜로이 허락한다(恩准)”고 썼다. 일반적으로 난징조약 체결을 통해 중국이 근대적인 조약체제에 편입되었다고 말하지만, 후자는 분명 오랑캐를 ‘기미(羈縻)’한다는 전통적인 중화세계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따라서 조약문 해석에서 청국과 영국 사이에는 명백한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으며,³⁹⁾ 이와 같은 상황이 야기한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의 광저우 성내 진출을 둘러싼 대립, 이른바 ‘광둥입성문제(廣東入城問題)’였다.

이 문제를 최종 결정짓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인물이 다름 아닌 해리 파크스였다. 파크스가 광저우의 통역관으로 임명된 것은 1851년 말의 일이다.⁴⁰⁾ 당시 청국에서 서구 열강과의 외교 창구는 광둥흠차대신(廣東欽差大臣)으로 단일화되어 있었다. 본래 이 자리는 광둥(廣東)·광시(廣西) 두 개 성을 다스리는 양광총독(兩廣總督)이 대외교섭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맡았던 것이지만 1844년 이후로는 거의 상설화되었다. 1850년 흠차대신을 상하이의 양강총독(兩江總督)이 겸임하기 전까지 광저우는 대서양(對西洋) 외교의 중심지였다.⁴¹⁾ 그러나 뜻밖에도 그러한 광저우의 개방은 다른 곳들과 달리 오랜 시간 실현되지 못했다. 스탠리 랜-폴(Stanley Lane-Poole)이 쓴 파크스 평전 『Sir Harry Parkes in China』(1901)에서는 광저우의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대중관계(對中關係)의 중심지인 광둥(Canton)은 모든 조약항들 중에서 가장 강고하게 배타적이었다. (중략) 다른 네 개 항구에서는 영사가 도시 내에 거주했지만 광둥에서는 영사나 다른 어떤 외국인, 심지어는 전권대신조차도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외국 ‘상관’들은 성 밖 강둑 위에 있었고, 유럽인 커뮤니티는 건물들 앞 정원의 매우 협소한 경계로 제한되었다. (중략) 중국 당국은 아모이, 푸저우, 닝보, 상하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광둥성 내에 영사관을 설치하

39) 모테기 도시오 지음·박준형 옮김, 『중화세계 붕괴사』, 와이즈플랜, 2018, 57~58쪽.

40) Stanley Lane-Poole, *Sir Harry Parkes in China*, METHUEN & CO., 1901, p.105.

41) 坂野正高, 앞의 책, 1973, 202~203쪽.

는 것에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광둥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과 그에 따른 폭동과 살인 가능성의 위험을 이유로 조약문의 집행을 연기하려고 최선을 다했다.⁴²⁾

그뿐만 아니라 파크스는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광저우 외국인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즉 “우리는 시골로 여행을 떠나서 이 혼잡한 도시로부터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완벽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그를 이용하려 시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공격을 하거나 돌을 던지고 총을 쏘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외의 거리에서조차 (도시는 우리에게 접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모욕을 받거나 침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은 지난 세기 콘스탄티노플에서 프랑크족이 당했던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대 방식으로 ‘외국인 악마’라는 말이 ‘기독교 개들’을 대신했을 뿐입니다.”⁴³⁾ 파크스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적대 행위가 조약상의 권리를 거부할 능력이 없음을 아는 중국 정부가 광저우 주민들을 선동한 결과라고 간주했다.⁴⁴⁾ 평전의 저자 또한 “대중의 적대감이 만다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획책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⁴⁵⁾

도시를 둘러싼 성벽이 광저우 주민들에게는 독립과 자존의 보루였던 반면, 영국인들에게는 저항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⁴⁶⁾ 성벽을 사이에 둔 양측의 공방은 이미 파크스가 광저우에 부임하기 전부터 반복되고 있었다. 다만 파크스가 재임한 1852년에서 54년까지는 비교적 평온한 시기였다. 1856년 6월 광저우에 다시 부임한 파크스는 부재중인 러더포드 알콕(Rutherford Alcock)을 대신하여 영사직을 대리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보다 앞서 대

42) Stanley Lane-Poole, op.cit., pp.108~109.

43) ibid., pp.112~113에서 재인용.

44) ibid., p.112.

45) ibid., p.116.

46) Robert Nield, op.cit., p.40.

청 강경노선의 파머스톤(H. Palmerston)이 1855년 1월 수상으로 취임하고, 이듬해 3월에는 파리강화조약 체결로 영국의 발목을 잡았던 크림전쟁이 종결되었다. 영국 정가가 이제 중국과 전쟁의 구실만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동년 10월 애로호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빌미로 영국군은 주장 연안 포대에 포화를 열었다. 그리고 1857년 12월에는 프랑스군과 함께 광저우 포격을 개시하여 하루 만에 점령했다.⁴⁷⁾ 1858년 1월 양광총독 예밍천(葉名琛)이 영국군에 체포되어 켈커타로 이송되었다. 연합군은 광둥순무 바이구이(柏貴)를 내세워 신정부를 세웠으나, 신임 총독은 3명의 외국인 위원들의 감독하에 놓였다. 그 중 한 명이 파크스였다. 그는 중국어가 가능하고 중국 사정에 정통한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광둥총독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⁴⁸⁾

이와 같이 ‘광둥입성문제’는 파크스의 큰 활약 속에 점령의 형태로 종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입성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외국인 거류구역, 곧 조계는 성밖에 조성되었다는 것이다.⁴⁹⁾ 1858년 3월 영국 해군이 조계 후보지로 조사한 곳은 모두 성밖에 있었다. 첫 번째는 옛 상관부지 하류의 성벽과 강 사이 지역, 두 번째는 강 상류 반대편 강둑, 마지막 세 번째는 사면이라는 곳이었다. 파크스가 최종 선택한 곳은 사면이었다. 사면은 이름과 달리 모래보다는 갯벌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부지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청국 거상의 점포 및 주택이 밀집해 있는 광저우 서쪽 지역에 근접해 있었고, 지형상 기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정박지로서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⁵⁰⁾ 1861년 9월 조성 부지에 대한 경매 실시와 동시에 중국과 영국 사이에 조계 설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에서는 “종래 영국정부가 광둥에서 보유하고 있던 지역은 거주 영국인을 수용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전제한 후, 새로운 거류구역에 대해서는 “영국정부가 매년 지체 없이 총액 39만 6천문의 지조를 지불하고, 또 해당 땅의 평정한 보유

47) 국제 정세 속 영국의 텐진조약 체결 경위는 横濱開港資料館編, 『圖說 日英關係史 1600~1868』, 原書房, 2021, 88~91쪽 참고.

48) 植田捷雄, 앞의 책, 1941, 355~357쪽.

49) Robert Nield, op. cit., p.40.

50) 植田捷雄, 앞의 책, 1941, 359쪽.

(undisturbed possession)를 유지하는 한 중국정부는 해당 땅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방기한다”고 명시했다.⁵¹⁾ 다시 말해서 이 협정은 일정의 지조 지불을 조건으로 청국 측이 그 땅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우에다의 지적처럼 다른 조계에서는 볼 수 없는 영토 할양에 근사한 내용이었다. 또한 다른 계약국 국민들과 달리 중국인들은 사면에서 차지가 허용되지 않았다.⁵²⁾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Korean and Her Neighbours)』로 잘 알려진 영국인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Isabella Bird)는 1879년에 사면을 방문한 후 “고립되고 배타적인 이 거류지는 문 앞의 봄비는 중국 도시(광저우: 인용자)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평했다.⁵³⁾ 로버트 닐드(Robert Nield)의 표현을 빌자면 광저우 조계는 “고요한 오아시스”처럼 고립되어 있었다.⁵⁴⁾

그렇다면 광저우의 영국인들은 왜 고립을 자처했을까. 로버트 홉은 “인종은 언제나 식민지주의와 식민지도시 경관의 일부”를 이룬다고 강조했다.⁵⁵⁾ 그리고 “백인종 우성 이론과 결합하여 방위와 공중위생문제는 백인 식민지 사회의 격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세포이 항쟁 이후 텔리에서 민간과 군대의 배치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한 사실을 들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인 관리는 성벽 내에서 인도인들과 이웃해 살았으나 반란에 대한 공포와 전염병에 대한 우려로 인해 유럽 군대는 성벽 내에, 영국인들의 거주지는 도시 북부에 배치되었다는 것이다.⁵⁶⁾ 광저우의 경우 입성 자체가 불가능했기에 텔리와 같이 배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는 없었지만, 연합군의 무력에 의한 광둥 점령 이후 성밖에 조성된 거류구역의 고립은 방위와 위생,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51) 植田捷雄, 앞의 책, 1941, 360~361쪽.

52) Robert Nield, op.cit., p.43.

53) Isabella L. Bird, *The Golden Chersonese and the Way Thither*, Jone Murray, 1883; Robert Nield, op.cit., p.44에서 재인용.

54) Robert Nield, op.cit., p.44.

55) 로버트·홈 著/布野修司·安藤正雄 監譯, 아시아都市建築硏究會 譯, 앞의 책, 2001, 187쪽.

56) 로버트·홈 著/布野修司·安藤正雄 監譯, 아시아都市建築硏究會 譯, 앞의 책, 2001, 193~195쪽.

이를 볼 때 ‘광둥입성문제’는 앞서 인용한 파크스 평전 저자의 논평과 반대로 영국 측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쟁점화된 것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광저우에서 조계 모델이 제시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광저우가 입성문제로 지체를 보이고 있는 사이 중국 최초의 조계 모델은 상하이에서 부상했다.

2) 상하이: 잡거와 분거, 전관과 공동의 기로

광저우에서는 불가능했던 조계 모델의 탄생이 왜 상하이에서는 가능했을까. 오카모토 다카시(岡本隆司)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난징조약에 의해 개방된 다섯 개 조약항 중 광저우와 푸저우는 각각 광둥성(廣東省)과 푸젠성(福建省)의 성도였던 만큼 청국정부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곳들이었고, 광저우, 아모이, 닝보는 조약 체결 이전에 이미 해외무역의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 나름의 관행들로 인해 서양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데 반해, 상하이는 그때까지 서양과 특별한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관민 모두 서양인의 내항이나 거류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항감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조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또한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영사관 또한 1843년 11월 성내에 있는 대저택을 임차하여 개설할 수 있었다.⁵⁷⁾

반복해서 말하지만 난징조약에서는 영국인의 거주무역권을 명시했지만 거류구역이나 그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던 까닭에, 개항 후 상하이에서는 성내에서 청국인과 외국인의 잡거, 이른바 ‘화양잡거(華洋雜居)’가 이루어졌다. 청국 측 입장에서 외국인의 거주무역권은 어디까지나 은혜적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국관헌은 외국인에 대한 토지 매각을 국법이 금하는 바라며 허락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외국인은 청국인 명의로 토지를 임차하거나 비밀리에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57) 岡本隆司, 앞의 책, 2012, 58~59쪽.

외국인들 또한 청국인들과의 관습 차이와 성내의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해 ‘화양잡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결국 상하이주재영국영사 발포어(George Balfour)와 상하이도대(上海道臺) 궁무주(宮慕久)는 상호 이해가 일치하는 속에서 1845년에 제1차 토지장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중국 최초의 조계가 황푸강 서안 일각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때 궁무주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다름 아닌 광둥상관이었다.⁵⁸⁾

토지장정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에다 도시오가 상세하게 분석을 행한 바 있다.⁵⁹⁾ 여기에서 그를 반복할 필요는 없으므로 조계 분류 기준에 따라 제1차 토지장정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조계가 어떤 성격이었던지만을 검토해 보자. 조계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우에다가 행정권 소속 국가의 수를 기준으로 일국전관조계와 열국공동조계로 구분하고, 또 조계 내 토지취득방법에 따라 Concession과 Settlement로 구분한 바 있다. Concession은 외국정부에 일정 구역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외국정부는 자국영사를 통해 해당 구역을 분할하여 개인에게 불하하는 방식을 취하는 데 반해, Settlement는 개개인이 원 소유자와 직접 교섭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다. 한편 손정목은 Concession과 Settlement를 나누는 기준으로 행정권의 소속 상태를 추가하여 내외국인 사이에 토지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계 내 행정권이 외국에게 완전히 넘어간 경우에는 침략성이 강하기 때문에 Settlement가 아니라 Concession이라 해야 한다고 수정을 가했으며, 페이청강(費成康)은 토지취득방식에 민조(民租)와 국조(國租), 다시 말해서 Settlement와 Concession만이 아니라 부분국조(部分國租, 외국정부가 조계 내 토지 일부만을 조차하는 방식)와 민향국조(民向國租, 조계 획정 후 일단 중국정부가 모든 토지를 수용한 후 외국인들이 다시 중국정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 방식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의했다.⁶⁰⁾ 이와 같은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조계를

58) 植田捷雄, 앞의 책, 1941, 66~71쪽.

59) 植田捷雄, 앞의 책, 1941, 70쪽. 손정목 또한 제1차 토지장정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으나(孫禎睦, 앞의 책, 1982, 20쪽) 이것은 우에다가 정리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동 장정의 특기 사항도 이어서 서술했으나(孫禎睦, 앞의 책, 1982, 21~22쪽) 이 또한 대부분 우에다의 분석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우에다의 분석 내용을 주로 참고했다.

분류하는 공통의 기준으로 행정권 소속 국가 수와 토지취득방식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두 개 기준 중 먼저 행정권 소속 국가 수와 관련된 제1차 토지장정의 조항을 살펴보자.

제14조 타국상인으로서 영국상인의 승조(承租)를 위해 확정해 둔 양징빈(洋涇濱) 경계 내에서 땅을 빌려 집을 짓거나, 혹은 집을 빌려 거주하거나 화물을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웅당 우선 영국영사관에 신청하여 허가 여부를 확인 받아** 오해가 없도록 한다.

제21조 타국인으로서 영국상인의 승조를 위해 확정해 놓은 양징빈 북쪽 끝 경계 내에서 땅을 빌려 집을 짓거나 주택을 빌리거나 창고를 빌리거나 잠시 머물려는 자는 **웅당 영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체의 장정을 준수함으로써** 화평과 안녕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23조 이후 상술한 장정을 어긴 자를 발견하여 상민으로부터 신고가 있거나 지방관원이 통고해 올 경우 **영국영사관은 웅당 곧 장정 위반 사항과 처벌 여부를 조사하여 조약, 장정의 위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판결하여 처벌한다.**

전관의 행사 여부는 중국과 영국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한 입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제14조에서는 타국상인, 곧 제3국인의 경우 조계 내에서 땅을 빌려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영국영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제21조에서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조계 내에서는 영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으며, 제23조에서는 만약 장정을 위반한 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권 또한 영국영사관에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조계라는 공간 내에서는 영국영사의 행정적 지배 아래 영국이 만든 룰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반했을 시 처벌의 권한 또한 영국영사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보면 제1차 토지장정에 의해 성립한 최초의

60) 박준형, 「日本專管租界 내 잠거문제와 공간재편 논의의 전개」, 『도시연구』 12, 2014, 8~9쪽.

조계는 영국의 ‘일국전관조계’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⁶¹⁾

다음으로 토지취득방식과 관련해서는 먼저 제1조에서 “상인들이 임차할 땅은 지방관헌과 영사관이 회동해서 경계를 확정한다”고 명시한 후, “화민(華民)들은 분순쑤쑤타이병비도(分巡蘇松太兵備道), 상하이지현(上海知縣), 해방동지아문(海防同知衙門)에 신고하여 상급 관헌에 보고하게 하고, 양상(洋商)은 응당 영사관에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계 부지가 영국 영사와 지방관헌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기만 하면 토지가옥 등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개개인들에게 맡겨졌다. 그 점에서 이 시기 조계는 우에다 도시오의 기준에 따른다면 ‘Concession’이 아니라 ‘Settlement’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들이다. 즉 제15조에서는 조계 내 원주민들이 원주민 상호 간이나 청국상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고, 제16조에서는 외국인이 청국인들에게 건물 임대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의도는 청국인들의 조계 내 신규 유입을 막는 동시에, 조계 내 원주민들도 외국인들과의 거래를 통해 점차 그 숫자를 감소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조계의 최종 형태는 외국인 전용 거주지였을 것이다. 따라서 우에다 도시오 또한 “사실 당시 조계 내에 지나인(청국인: 인용자) 주민은 원칙적으로 없었다. 다만 외국인에게 필수품을 공급하는 소매상인 및 외국인의 고용인들이 예외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⁶²⁾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설된 조계는 기본적으로 토지취득이 개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Settlement’의 성격을 띠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거주가 허용된 청국인들을 제외하더라도 위 조항들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거주지, 곧 ‘화양분거’를 완전히 실현하기에는 상당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61) 제1차 토지장정 공포 전 해인 1844년에 차례로 중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영국과 같은 권리를 획득한 미국과 프랑스 입장에서 보자면 조계에서 영국이 행사하는 독점적 지위는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미국과 프랑스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조계 내에 거주하며 영국의 지배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조계를 설정할 것이냐 두 가지였는데, 전자를 취한 것이 미국, 후자를 취한 것이 프랑스였다(植田捷雄, 앞의 책, 1941, 76~83쪽).

62) 植田捷雄, 앞의 책, 1941, 74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지하다시피 1853년 소도회(小刀會)의 봉기는 상하이 조계 발전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 소도회가 상하이 현성을 점령하자 성내 청국인들은 안정을 찾아 조계 내로 몰려 들어왔다. 게다가 태평천국 지배하에 있었던 지역으로부터도 가난한 난민뿐만 아니라 부유층 청국인들도 다수 유입되었다. 조계 측은 청국인의 유입을 자력으로 저지할 수 없는 현실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책임 혹은 단순한 돈벌이를 위해 청국인의 조계 내 거주를 용인했다. 이후 이러한 현상을 제2차 토지장정을 통해 공인했으며, 이때부터 상하이에서는 ‘화양잡거(華洋雜居)’ 시대가 다시 열렸다. 오카모토 다카시는 “우리들이 ‘조계’라고 부르며 떠올리는 실체는 여기에서 처음 갖추어졌다”고 하면서 영국영사 알콕을 “상하이 조계의 건설자”라고 강조했다.⁶³⁾ 페이청강 또한 조계제도를 처음 만든 사람으로 알콕을 지목했다.⁶⁴⁾ 제1차 토지장정 공포와 함께 조계가 처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장정 체결 이후인 1846년에서야 상하이에 부임한 알콕을 ‘조계의 건설자’로 칭한 것은 조계 모델이 제1차 토지장정이 아니라 알콕에 의해 주도된 제2차 토지장정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제2차 토지장정의 내용 또한 제1차 때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행정권 소속 국가 수이다. 영국 전관에 대한 후속 계약국들의 반발로 인해 알콕은 1853년 5월 “영국정부는 더 이상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할 의사가 없다”면서 미국영사에게 신장정의 초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1854년 7월 영국영사관에서 열린 조지인회의(租地人會議)에서 “수많은 외국인과 중국인이 접거한 이 세계적 조계의 복잡한 요소를 통일해야 할 어떤 권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장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승인된 신장정 서문에서는 “구장정을 대신해서 조계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평등한 구속력을 갖는 신장정을 제정하는 것이 전 거류민의 평화, 쾌적, 행복을 위해 편리하고 또 필요하기도 하다”고 선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국의 배타적 관할권, 곧 전관을 방기했다.⁶⁵⁾ 구체적으로는 “무릇 화인(華人)에게 건물을 구매

63) 岡本隆司, 앞의 책, 2012, 9쪽.

64) 費成康, 앞의 책, 1991, 205쪽.

하거나 땅을 빌리고자 하는 자는 모름지기 해당 땅의 지도를 작성하고 사방 경계와 면적을 기입해서 해당국 영사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제2조), 장정 위법자에 대해서도 “영사가 곧 소환하여 신문한 후 엄히 처벌한다. 만약 그 사람의 소속 영사가 없을 경우에는 도대에게 넘겨 대신 처벌하도록 한다”고 하여 처벌권이 기본적으로는 해당국 영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제13조). 이와 같이 제2차 토지장정은 영국, 미국, 프랑스 3국 영사의 공동 명의로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배와 처벌에 있어서도 소속국 영사가 자국민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상하이 조계의 성격은 ‘일국전관조계’에서 ‘각국공동조계’로 전환되었다.

다음으로 토지취득은 앞서 언급한 제2조에서 볼 수 있듯이 개개인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계의 성격은 변함없이 ‘Settlement’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구 장정의 제15조와 제16조와 같이 청국인과의 거래를 금지한 조항들은 모두 사라졌다. 다만 청국인들이 토지가옥을 임차 또는 구매할 수 있는 절차를 언급한 조항 또한 없었다. 이처럼 규정상으로는 청국인의 잡거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미국영사는 청국인과의 잡거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여 청국 도대로 하여금 청국인의 잡거금지령을 발하게 하는 한편 시참사회(市參事會)에도 청국인 유입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국인 이주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영국·미국영사는 1855년 2월 도대와 다시 협의하여 「상하이화민주거조계내조례(上海華民住居租界內條例)」를 도대 명의로 공포했다.⁶⁵⁾ 이 조례에서는 중국인이 조계 내에서 토지나 가옥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다. 이때 영국·미국·프랑스 3국 영사의 승인과 지방관헌의 관인이 찍힌 허가증을 필요로 했는데, 그 허가를 위해서는 지주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소속 영사에게, 중국인일 경우에는 지방관헌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이를 여러 차례 위반했을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고, 마지막으로 토지장정 엄수와 부과금 납부 의무까지 명시했다.

65) 植田捷雄, 앞의 책, 1941, 93~94쪽.

66) 植田捷雄, 앞의 책, 1941, 96쪽.

요컨대 난징조약 체결 후 ‘화양잡거’로 시작한 상하이 외국인 거류제도는 제1차 토지장정 공포를 통해 ‘화양분거’로 전환되었다. 이에 근거해서 외국인 전용을 상정한 최초의 조계가 설치되었으나, 그것은 예외적 상황을 만들면서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만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도회 붕괴 후 조계 내 중국인의 대거 유입을 배경으로 제2차 토지장정이 체결됨에 따라 ‘화양잡거’는 공인되었다. 다만 이때의 잡거는 상하이 현성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서의 잡거였으며, 잡거지가 된 조계에서의 행정권은 점차 중국 관할에서 이탈되어 갔다. 결국 일반적으로 ‘조계’라고 할 때 떠올리게 되는 내외국인 잡거, 각국 공동관할의 ‘조계’ 모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분거’에서 ‘잡거’로 회귀하는 과정과 유사한 국면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과 함께 일본은 ‘전관·전용의 단독조계’를 설치했다. 이것은 일정의 지조 지불을 조건으로 한국 측이 그 땅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거의 포기했다는 점에서 광저우 조계와 유사했다. 그런데 1880년대에 들어 조선이 미국을 시작으로 청국, 영국, 독일 등과 차례로 조약 및 장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조선의 외교 지형은 다각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개항장에서의 일본의 독점적 지위도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 상하이에서 영국이 조계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포기했던 것처럼 일본 또한 ‘전관·전용의 단독조계’라는 기존 조계의 성격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했다. 이때 이슈가 되었던 것 또한 타국인의 잡거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였다.⁶⁷⁾

상하이에서의 결론은 위에서 말했듯이 거주국 국민의 잡거를 허용한 각국 공동조계였다. 그러나 일본은 영국과 달리 서구 열강들과 불평등조약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였던 까닭에 한국인은커녕 다른 외국인과의 잡거도 허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전관·전용의 단독조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부산과 원산의 뒤를 이어 새롭게 개방된 인천에 한해서만 ‘Concession’에서 ‘Settlement’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영국은 각국공동조계 모델을 인천에 이식했는

67) 박준형, 앞의 논문, 2014 참고.

데,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그것은 거주국 국민, 곧 조선인과의 잡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다만 일본에서 새롭게 등장한 '차지(借地)하는 잡거지'를 조약상의 공간구조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조계 밖 10리 이내'에 한해서는 조선 지방관의 행정 하에 외국인과 조선인의 잡거를 허용했다.⁶⁸⁾

4. 맺음말

1842년 영·청 간 난징조약 체결로 다섯 개 '조약항'이 영국인의 거주무역을 위한 장소로 개방되었으나, 그 공간에 대한 이해는 양측이 달랐다. 즉 조약항이 항구만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도시 지역도 포함하는지부터가 명확하지 않았다. 더구나 난징조약의 후속조약으로 체결된 후면조약부터는 외국인을 위한 거주구역 설정 절차를 규정해 놓음으로써 '조계'라는 공간이 새롭게 창출되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조약항과 조계의 관계가 문제시 되었다. 그것은 또한 조계(혹은 조약항) 밖 공간, 곧 '내지'와의 경계에 대한 질문과 연동하고 있었다. 내지는 조약체제하에서 그 중심성을 잃고 상대화되어 갔으나, 청은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공간구조의 외적 확대를 시도했다. 다시 말해서 조약상의 공간구조 준수를 통해 '속국구하기'를 시도했던 것인데, 1858년 텐진조약 체결로 청과 조선 사이에 공간구조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에는 불가능해졌던 일이,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 체결로 그 차이가 해소됨에 따라 내지를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재개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국 영토의 내적 공간 분할 또한 진전되어 갔다. '조약항', '조계', '내지' 등 조약상에 규정된 공간들은 구체적인 사례들 속에서 각각의 관계들이 조율되며 하나의 공간구조를 만들어 갔다. 먼저 광둥상관이 위치해 있던 광저우에서는 전쟁 경험으로 인한 원한과 전통적인 화이사상에 기반한 배외주의가 매우 강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따라서 다른 조약항들과 달

68) 일본 조계 모델의 조선 전과 과정에 대해서는 박준형, 앞의 논문, 2023 참고.

리 외국인 입성이 오랜 시간 지체되었으며, 결국에 그것은 제2차 아편전쟁 시 군사적 점령을 통해서야 실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광저우 조계는 성내가 아니라 성밖에 조성되었다. 이는 입성 문제가 실제적 필요보다는 정치적 이슈였음을 말해 준다. 청국인의 차지(借地)도, 청국정부의 간여도 일절 금지된 광저우 조계는 강과 운하에 둘러싸여 ‘고요한 오아시스’처럼 고립되었다. 한편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졌던 상하이의 개방은 오히려 순조롭게 진행되어 성내에서 ‘화양잡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잡거로 인한 불편으로 인해 1845년 제1차 토지장정이 공포되었고 그에 따라 외국인 거류구역으로서 조계가 처음 등장했다. 이때의 조계는 영국의 일국전관조계이면서 개개인 이 원 소유자와 직접 교섭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Settlement’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의 뒤를 이어 청과 조약을 체결한 미국과 프랑스가 영국의 독점적 지위에 반발하고 나서고, 또 소도회의 반란으로 인해 청국인 인구가 조계에 대거 유입됨에 따라, 1854년에 체결된 제2차 토지장정에서는 영국이 전관 포기를 선언하는 한편, 후속적인 조례 공포를 통해 청국인의 잡거 또한 허용했다. 결과적으로 거주국 국민의 잡거를 허용한 각국공동조계가 탄생하게 되었다.

위 조계 모델은 이후 청국 각지에 전파되었으며,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조선 인천에도 이식되었다. 상하이 조계 모델은 영국영사로 재임하던 알록의 작품으로 일컬어지는데, 그것을 일본과 조선에 이식하는 데에는 알록의 부하로서 경험을 쌓은 파크스의 역할 또한 컸다.⁶⁹⁾ 다만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온 그것은 거주국 국민의 잡거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일본의 ‘차지하는 잡거지’를 ‘조계 밖 10리 이내’라는 형태로 조약상의 공간구조 속에 편입시켰다. 한편 조선외교의 다각화는 기존 일본조계의 재검토를 야기했으나, 결국 일본조계의 ‘전관전용의 단독조계’라는 특성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그것은 상하이보다는 광저우 조계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다만

69) 조영조약 체결 전후 시기부터 조선에서 활동한 영국외교관들에 대해서는 한승훈, 「조선의 불평등 조약체제 편입에 관여한 영국외교관의 활동과 그 의의(1882~1884)」, 『한국근대사연구』 2010년 봄호 제52집, 2010에 상세하다.

광저우 조계와 같이 '고요한 오아시스'에 머물지는 않았다. 1904년에 출판된 『조선이주안내』의 서문 격에 해당하는 다음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일본인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항구적 거주를 목표로 한 입식지였으며, 그에 따라 잡거는 조계가 아니라 내지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어 갔다.

부원이 있는 곳, 자유가 있는 곳, 이곳이 나의 고향이라는 것은 영국민족의 이상이다. 따라서 저들은 미련을 가지고 부모의 유산에 기대는 것과 같은 일은 남자가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일로 간주하며, 천만리 밖 어떤 곳이라 해도 만약 부원을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면 자진해서 이주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중략) 일본 내지에서 몸 둘 바를 몰라 생활난, 직업난을 한탄하기를 그만두고 하루라도 빨리 조선으로 이주해서 이 호기회를 이용하기를 주저하지 말 지어다. 청산이 밭 닿는 곳마다 있고, 부원이 존재하는 곳, 자유가 있는 곳, 이곳이 나의 고향이다.⁷⁰⁾

70) 山本庫太郎, 『朝鮮移住案内』, 民友社, 1904, 1~13쪽.

■ 참고문헌

- 『舊條約彙纂』 제1권 제1부, 外務省條約局, 1930.
- 『中外舊約章彙編』, 三聯書店, 1957.
- 『清朝條約全集』 제1권, 黑龍江人民出版社, 1999.
- 『근대 조약과 동아시아 영토침탈 관련 자료 선집』 I, 동북아역사재단편, 2021.
- 岡本隆司, 『ラザフォード・オルコック』, ウェッジ, 2012.
- 김현수, 『대영제국의 동아시아 외교 주역 해리 S. 파크스』, 단국대학교출판부, 2011.
- 楠家重敏, 『W. G. アストン: 日本と朝鮮を結ぶ學者外交官』, 雄松堂出版, 2005.
- 山本庫太郎, 『朝鮮移住案内』, 民友社, 1904.
- 植田捷雄, 『支那租界論』, 嚴松堂書店, 1934.
- _____, 『支那に於ける租界の研究』, 嚴松堂書店, 1941.
- _____, 『東洋外交史』, 東京大學出版會, 1969.
- 이동욱, 『조약 체제 속에서 ‘천조의 ‘속국’ 지키기: 『南京條約』 체제에서 『天津條約』 체제로』,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년 4호, 2019.
- 모테기 도시오 지음 · 박준형 옮김, 『중화세계 붕괴사』, 와이즈플랜, 2018.
- 박준형, 『日本專管租界 내 잡거문제와 공간재편 논의의 전개』, 『도시연구』 12, 2014.
- _____,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하 외국인 거류제도의 계보: 일본 모델의 한국 전파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01, 2023.
- 飯島涉, 『「裁釐加税」問題と清末中国財政: 1920中英マッケイ条約交渉の歴史的地位』, 『史学雑誌』 102 (11), 1993.
- 費成康, 『中國租界史』,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1.
- 坂野正高, 『近代中國政治外交史』, 東京大學出版會, 1973.
- 한승훈, 『조선의 불평등조약체제 편입에 관여한 영국외교관의 활동과 그 의의(1882~1884)』, 『한국근대사연구』 2010년 봄호 제52집, 2010.
- 橫濱開港資料館編, 『圖說 日英關係史 1600~1868』, 原書房, 2021.
- F.V.ディキンス, 『パークス傳: 日本駐在の日々』, 平凡社, 2007.
- ロバート・ホーム 著/布野修司・安藤正雄 監譯, アジア都市建築研究會 譯, 『植えつけられた都市: 英國植民都市の形成』,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1.
- Robert Nield, *China's Foreign Places: The Foreign Presence in China in the Treaty Port Era, 1840-1943*, Honkong University Press, 2015.
- Stanley Lane-Poole, *Sir Harry Parkes in China*, METHUEN & CO., 1901.

Genealogy and Origins of Modern Foreign Residency in East Asia

- Focusing on the Chinese “Foreign Settlement” Model -

Park, Jun-Hyung*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historical lineage of foreign residency systems in East Asia, transcending national boundaries and tracing their origins back to China,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emergence of the “foreign settlement(租界)” model.

In the pre-modern era, East Asian countries typically confined foreign trade activities to specific designated areas. Examples include Dejima in Nagasaki, Japan; Guangdongshangguan in Guangzhou, China; and Choryangwaegwan in Busan, South Korea. However, as the transition to modern treaty systems unfolded, these existing foreign residency systems underwent significant transformations.

British influence played a crucial role in amalgamating these systems into a cohesive lineage. While the United States played a leading role in Japan's opening, it was Britain that not only facilitated access to China, establishing the “foreign settlement” paradigm, but also introduced a new residency model in Japan. Similarly, although Japan spearheaded Korea's opening, Britain transplanted the Japanese residency model to Korea, setting the standard for “foreign settlements.” Thus, the genealogy of East Asian foreign residency systems can be traced through the lens of British diplomacy in the region.

The “foreign settlement” model did not emerge simultaneously with the

* Associated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University of Seoul

signing of modern treaties. Due to the absence of a pre-existing urban planning framework, a treaty foundation for its definition had to be established first. It was consistently delineated in relation to the area outside the “foreign settlement,” known as the “inland.” The regime formed by these treaty spaces occasionally aimed to extend outward to the “vassal states” with entirely distinct intentions. Mean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treaty space was ultimately crystallized in concrete examples of treaty ports such as Guangzhou and Shanghai. The birth of the “foreign settlement” model can be seen as the culmination of this intricate process. However, the possibilities left in the wake of this process would subsequently lead to various iterations in another phase, disseminating not only within China but also reaching Japan and Korea.

Key words: genealogy of the foreign residency system, “foreign settlement,” “inland,” Guangzhou, Shanghai, birth of “foreign settlement” model

부록

〈난징조약 체결 이후 외국인 거류제도 관련 조약 규정 모음〉

조약명	조항	조문
난징조약 (청-영) (1842.8)	제2조	<p>(한문) 自今以後, 大皇帝恩准英國人民帶回所屬家眷, 寄居沿海之廣州, 福州, 廈門, 寧波, 上海等五處港口, 貿易通商無礙; 英國君主派設領事, 管事等官, 住該五處城邑, 專理商賈事宜, 與各該地方官公文往來; 令英人按照下條開敘之例, 清楚交納貨稅, 鈔餉等費.</p> <p>(영문) His Majesty, the Emperor of China agrees, that British subjects, with their families and establishments, shall be allowed to reside,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their mercantile pursuits, without molestation or restraint, at the cities and towns of Canton, Amoy, Fuchow, Ningpo and Shanghai; And Her Majesty the Queen of Great Britain, etc. will appoint Superintendents, or Consular Officers, to reside at each of the above named cities or towns, to be the medium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Chinese Authorities and the said Merchants, and to see that the just duties and other dues of the Chinese Government, as hereafter provided for, are duly discharged by Her Britannic Majesty's subjects.</p>
	제5조	<p>(한문) 凡英國商民在粵貿易, 向例全歸額設行商, 亦稱公行者承辦, 今大皇帝准其嗣後不必仍照向例, 凡有英商等赴各該口貿易者, 勿論與何商交易, 均聽其便.</p> <p>(영문) The Government of China having compelled the British merchants trading at Canton to deal exclusively with certain Chinese merchants, called Hong merchants(or Cohong), who had been licen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for that purpose, the Emperor of China agrees to abolish that practice in future at all ports where British merchants may reside, and to permit them to carry on their mercantile transactions with whatever persons they please.</p>
후면조약 (청-영) (1843.10)	제4조	<p>(한문) 廣州, 福州, 廈門, 寧派, 上海五港口開關之後, 其英商貿易處所, 只准在五港口, 不准赴他港口內, 亦不許華民在他處港口, 串同私相貿易, 將來英國公使, 有諭示明不許他往, 而英商如或背約不服禁令, 及將公使告示置若罔聞, 擅往他處港口, 遊奕販賣, 任憑中國員弁, 連船連貨, 一併抄取入官, 英官不得爭論, 倘華民在他處港口, 與英商私串貿易, 則國法具在應照例辦理.</p> <p>(영문) After the Five Ports of Canton, Fuchow, Amoy, Ningpo and Shanghai shall be thrown open, English Merchants shall be allowed to trade only at those Five Ports, Neither shall they repair to any other Ports or Places, nor will the Chinese people at any other Ports or Places, be permitted to trade with them, If English Merchant Vessels shall, in contravention of this Agreement, and of a Proclamation to the same purport to be issued by the British Plenipotentiary, repair to any other Ports or Places, the Chinese Government Officers shall be at liberty to seize and confiscate both Vessels and Cargoes, and should Chinese People be discovered clandestinely dealing with English Merchants, at filly other Ports or Placese, they shall be punish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such Manner as the Law may direct.</p>

	제6조	<p>(한문) 廣州等五港口, 英商或常川居住, 或不時來往, 均不可妄到鄉間, 任意遊行, 更不可遠入內地貿易, 中華地方官, 應與英國管事官, 各就地方民情地勢, 議定界址, 不許踰越, 以期永久彼此相安, 凡係水夫及船上人等, 俟管事官與地方官, 先行立定禁約之後, 方准上岸, 倘有英人違背此條禁約, 擅到內地遠遊者, 不論係何品級, 即聽該地方人民捉拿交, 英國管事官依情處罪, 但該人民等, 不得擅自毆打傷害, 致傷和好.</p> <p>(영문) It is agreed, that English merchants and others residing at or resorting to the Five Ports to be opened shall not go into the surrounding Country beyond certain short distances to be named by the local authorities, in concert with the British Consul, and on no Pretence for purposes of traffic, Seamen and person belonging to the ships shall only be allowed to land under authority and rules which will be fixed by the Consul, in communication with the local officers and should any persons whatever infringe the stipulations of this Article and wander away into the Country, they shall be seized and handed over to the British Consul for suitable punishment,</p>
	제7조	<p>(한문) 在萬年和約內言明, 允准英人攜眷, 赴廣州、福州、廈門、寧波、上海五港口居住, 不相欺侮, 不加拘制, 但中華地方官, 必須與英國管事官, 各就地方民情, 議定於何地方用何房屋, 或基地係准英人租賃, 其租價, 必照五港口之現在所值高低, 為准務求平允, 華民不許勒索, 英商不許強租, 英國管事官, 每年以英人, 或建屋若干間, 或租屋若干所, 通報地方官轉報立案, 惟房屋之增減, 視乎商人之多寡, 而商人之多寡, 視乎貿易之衰旺, 難以預定額數.</p> <p>(영문) The Treaty of perpetual Peace and Friendship provides for British subjects and their Families residing at the Cities and Towns of Canton, Fuchow, Amoy, Ningpo and Shanghai without molestation or restraint, It is accordingly determined that ground and houses; the rent or price of which is to be fairly and equitably arranged for, according to the rates prevailing amongst the people, without exaction on either side; shall be set apart by the local officers, in communication with the Consul, and the number of houses built or rented, will be reported annually to the said local Officer by the Consul for the information of their respective Viceroy and Governors, but he number cannot be limited, seeing that it will be greater or less according to the resort of Merchants,</p>
<p>왕샤조약 (청-미) (1844.7)</p>	제3조	<p>(한문) 嗣後, 合衆國民人, 俱准其挈帶家眷, 赴廣州、福州、廈門、寧波、上海共五港口居住貿易, 其五港口之船隻, 裝載貨物, 互相往來, 俱聽其便, 但五港口外, 不得有一船駛入別港, 擅自遊奕, 又不得與沿海奸民, 私相交易, 如有違犯此條禁令者, 應按現定條例, 將船隻貨物, 俱歸中國入官.</p> <p>(영문) The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re permitted to frequent the five ports of Quanchow, Amoy, Fuchow, Ningpo, and Shanghai, and to reside with families and trade there, and to proceed at pleasure with their vessels and merchandise to or from any foreign port and either of the five ports, and from either of said five ports to any other of them; but said vessels shall not unlawfully enter the other ports of China, nor carry on a clandestine and fraudulent trade along the coasts thereof; and any vessel belonging to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which violates this provision shall, with her cargo, be subject to confiscation to the Chinese Government,</p>

	제17조	<p>(한문) 合衆國民人, 在五港口貿易, 或久居或暫住, 均准其租住民房, 或租地自行建樓, 並設立醫館禮拜堂及殯葬之處, 必須由中國地方官, 會同領事等官, 察民情擇定地基, 聽合衆國人與內民, 公平議定租息, 內民不得擦價措勒, 遠人勿許強利硬占, 務要各出情願以昭公允, 倘墳墓或被中國人毀掘, 中國地方官嚴拿照例治罪, 其合衆國人泊船寄居處所, 商民水夫人等止, 准在近地行走, 不准遠赴內地鄉村, 任意閒遊, 尤不得赴市鎮, 私行貿易, 應由五港口地方官, 各就民情地勢, 與領事官議定界址, 不許逾越, 以期永久彼此相安.</p> <p>(영문)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residing or sojourning at any of the ports open to Foreign commerce shall enjoy all proper accommodation in obtaining houses and places of business, or in hiring sites from the inhabitants on which to construct houses and places of business, and also hospitals, churches, and cemeteries. The local authorities of the two Governments shall select in concert the sites for the foregoing objects, having due regard to the feelings of the people in the location thereof; and the parties interested will fix the rent by mutual agreement, the proprietors in the one hand not demanding any exorbitant price, nor the merchants on the other unreasonably insisting on particular spots, but each conducting with justice and moderation; and any desecration of said cemeteries by subjects of China shall be severely punished according to law.</p>
황푸조약 (청-프) (1844.12)	제2조	<p>(한문) 自今以後, 凡佛蘭西人家眷, 可帶往中國之廣州, 廈門, 福州, 寧波, 上海五口市埠地方居住貿易, 平安無礙, 常川不輟, 所有佛蘭西船, 在五口停泊, 貿易往來, 均聽其便, 惟明禁不得進中國別口貿易, 亦不得在沿海各岸各貨私買私賣, 如有犯此款者, 除於第三十款內載明外, 其船內貨物聽憑入官, 但中國地方官查拏此等貨物, 於未定入官之先, 宜速知會附近駐口之佛蘭西領事.</p>
	제22조	<p>(한문) 凡佛蘭西人按照第二款至五口地方居住, 無論人數多寡, 聽其租賃房屋及行棧貯貨, 或租地自行建屋建行, 佛蘭西人亦一體可以建造禮拜堂, 醫人院, 周急院, 學房, 墳地各項, 地方官會同領事官, 酌議定佛蘭西人宜居住, 宜建造之地, 凡地租房租多寡之處, 彼此在事人務, 須按照地方價值定議, 中國官阻止內地民人高擡租值, 佛蘭西領事官亦謹防本國人強壓迫受租值, 在五口地方, 凡佛蘭西人房屋間數, 地段寬廣不必議立限制, 俾佛蘭西人相宜獲益, 倘有中國人將佛蘭西禮拜堂墳地, 觸犯毀壞, 地方官照例嚴拘重懲.</p>
	제23조	<p>(한문) 凡佛蘭西人在五口地方居住或往來經游, 聽憑在附近處所散步, 其日中動作一如內地民人無異, 但不得越領事官與地方官議定界址, 以為營謀之事, 至商船停泊, 該水手人等亦不得越界遊行, 如時當登岸, 須遵約束規條; 所有應行規條, 領事官議定照會地方官查照, 以防該水手與內地民人滋事爭端, 佛蘭西無論何人, 如有犯此例禁, 或越界或遠入內地, 聽憑中國官查拏, 但應解送近口佛蘭西領事官收管; 中國官民均不得毆打, 傷害, 虐待所獲佛蘭西人, 以傷兩國和好.</p>
텐진조약 (청-영) (1858.6)	제9조	<p>(한문) 英國國民人准聽持照前往內地各處遊歷通商, 執照由領事官發給, 由地方官蓋印, 經過地方, 如飭交出執照, 應可隨時呈驗, 無訛放行; 雇船, 僱人, 裝運行李, 貨物, 不得攔阻, 如其無照, 其中或有訛誤, 以及有不法情事, 就近送交領事官懲辦, 沿途止可拘禁, 不可凌虐, 如通商各口有出外遊玩者, 地在百里, 期在三五日內, 毋庸請照, 惟水手船上人等, 不在此列, 應由地方官會同領事官, 另定章程, 妥為彈壓, 惟於江寧等處, 有賊處所, 候城池克復之後, 再行給照.</p>
		<p>(영문) British subjects are hereby authorized to travel, for their pleasure or for purposes of trade, to all parts of the interior, under passports</p>

	<p>which will be issued by their Consuls, and countersigned by the local authorities. These passports, if demanded, must be produced for examination in the localities passed through, If the passport be not irregular, the bearer will be allowed to proceed, and no opposition shall be offered to his hiring persons or hiring vessels for the carriage of his Baggage or Merchandise. If he be without a passport, or if he commit any offence against the law, he shall be handed over to the nearest Consul for punishment; but he must not be subjected to any ill-usage in excess of necessary restraint. No passport need be allied for by persons going on excursions from the ports open to trade to a distance not exceeding one hundred li, and for a period not exceeding days. The provision of this Article do not apply to crews of ships, for the due restraint of whom regulations will be drawn up by the Consul and the local authorities. To Nanking, and other cities disturbed by persons in arms against the Government, no pass shall be given, until they shall have been recaptured.</p>
	<p>제11조</p> <p>(한문) 廣州、福州、廈門、寧波、上海五處，已有江寧條約舊准通商外，即在牛庄、登州、臺灣、潮州、瓊州等府城口，嗣後皆准英商辦可任意與無論何人買賣，船貨隨時往來，至於聽便居住、賃房、買屋、租地起造禮拜堂、醫院、墳墓等事，並另有取益防損諸節，悉照已通商五口無異。</p> <p>(영문) In addition to the cities and towns of Canton, Amoy, Fuchow, Ningpo, and Shanhai, opened by the Treaty of Nanking, it is agreed that British subjects may frequent the cities and ports of Newchwang, Tängchow, Taiwan[Formosa], Chawchow[Swatow], and Kiungchow[Hainan]. They are permitted to carry on trade with whomsoever they please, and to proceed to and fro at pleasure with their Vessels and Merchandise. They shall enjoy the same privileges, advantages, and immunities, at the said towns and Ports, as they enjoy at the Ports already opened to trade, including the right of residence, of buying or renting houses, of leasing Land therein, and of building Churches, Hoslitals, and Cemeteries.</p>
	<p>제12조</p> <p>(한문) 英國民人，在各口並各地方，意欲租地蓋屋，設立棧房、禮拜堂、醫院、墳塋，均按民價照給，公平定議，不得互相勒捐。</p> <p>(영문) British subjects, whether at the Ports or at other places, desiring to build or open Houses, Warehouses, Churches, Hospitals, or Burial-grounds, shall make their agreement for the land or buildings they require, as the rates prevailing among the people, equitably, and without exactions on either side.</p>
<p>즈푸조약 (청-영) (1876.9)</p>	<p>제3조 제1항</p> <p>(한문) 所有現在通商各口岸，按前定各條約，有不應抽收洋貨釐金之界，茲由威大臣議請本國，准以各口租界，作為免收洋貨釐金之處，俾免漫無限制。(후략)</p> <p>(영문) With reference to the area within which, according to the treaties in force, likin(釐金: 인용자) ought not to be collected in foreign goods at the open ports, Sir Thomas Wade agrees to move his Government to allow the ground rented by foreigners(the so-called concessions) at the different ports, to be regarded as the area of exemption from likin. (후략)</p>

	<p>(한문) (전략) 至通商善後章程第七款, 載明洋貨運入內地及內地置買土貨等語, 係指沿海、沿江、沿河、及陸路各處不通商口岸, 皆屬內地. (후략)</p>
<p>제3조 제4항</p>	<p>(영문) (전략) The words, <i>nei ti</i>, inland, in the clause of Article VII of the Rules appended to the Tariff, regarding carriage of imports inland, and of native produce purchased inland, apply as much to places on the sea coasts and river shores, as to places in the interior not open to foreign trade. (후략)</p>